

제170회(정례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면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추경예산(안) 규모

<표 1>

(단위 : 천원)

구 분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	간주처리 (10회~17회)
합 계	223,653,917	219,250,987	4,402,930
일 반 회 계	186,447,379	182,154,449	4,292,930
특 별 회 계	37,206,538	37,096,538	110,000
의료급여기금	81,394	41,394	40,000
주 차 장	37,125,144	37,055,144	70,000

2. 위원회별 명시이월 현황

<표 2>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일 반 회 계	
	건 수	금 액
합 계	9	2,567,500
시민행정위원회	6	477,500
재무건설위원회	3	2,090,000

3. 검토의견

○ 총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236억 6,391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4억 293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가 늘어났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예산은 1,864억 4,737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2억 9,293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3%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예산은 372억 653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2%인 1억 1천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 명시이월의 타당성

- 먼저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에 따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명시이월비는 총 9건, 25억 6,750만원으로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은 6건, 4억 7,750만원이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3건, 20억 9천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2006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명시이월비의 한도액을 벗어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월사유를 보면 중앙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지연 교부와 계절적 공사발주 어려움, 절대공기부족, 관계기관과의 협조지연 및 창신·송인지역 뉴타운 사업지구 미지정에 따른 용역 미발주 등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는 달리 다음연도로 재차이월이 가능하며, 회계연도독립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예산회계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